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(송명화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03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1월 19일

발 의 자 : 송명화, 김기대, 김기덕,
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
박기열, 박기재, 박순규,
봉양순, 성흠제, 송도호,
송아량, 오현정, 유정희,
이영실, 임종국, 최정순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조문 제정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서 학교숲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학교 내 수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」 로 조문 제정

나. 조례의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

다. 학교숲 조성·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

라. 학교숲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정비

마. 학교숲 조성의 행정적,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

바. 학교숲 조성·관리 효율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학교숲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.

1.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, 꽃, 잔디,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
2. 의자, 쉼터, 숲 해설판
3.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지도·감독을 받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.

제4조(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
2.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
3.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4.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
6. 신설학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학교숲 조성
7. 학교숲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8.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학교숲 조성 기준)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자연성 확보: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
2. 기능성 실현: 조성 목적, 학교 환경,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
3. 접근성 확대: 학생, 학부모,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조성
4. 교육적 활용: 향토 수종, 교목,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
5. 다목적 공간 구성: 체육 공간, 쉼터,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
6. 녹지면적 확대: 실내조경, 벽면 녹화, 옥상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
7. 안전성 확보: 조성 및 관리,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

제6조(학교숲 관리) 학교의 장은 조성된 학교숲의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인
보전과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(학교숲 활성화)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
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
2.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
3.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
4.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
있다.

제8조(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)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
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
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
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업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위
촉직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 2. 학교, 연구소, 학회, 협회, 관련 기관,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3.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, 관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,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5조(우수사례 발굴 등)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

2022010400000008

미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송명화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04

회신일 : 2022.01.14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침부 근거 규정
3. 미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8조(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)에 따라 비용 발생
 - 같은 조례안 제13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에 따라 학교숲 조성, 관리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학교숲에 대한 현황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29,400천원(연평균 5,880천원)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9,400천원으로 연평균 5,88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안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위원이 9명인 것으로 하되 이 중 위촉직 위원은 8명으로 함.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
 -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29,400천원(연평균 5,88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비 (안 제8조)	5,880	5,880	5,880	5,880	5,880	29,400
	소계 (b)	5,880	5,880	5,880	5,880	5,880	29,400
총비용 (b-a)		5,880	5,880	5,880	5,880	5,880	29,400

○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비 ≙ 29,400천원

- 산출방식 $\sum_{i=1}^5$ (연간위원회운영비)_i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2~2026)

- 연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운영비

≙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+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

≙ 4,800천원 + 1,080천원

≙ 5,880천원

·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= 위촉직 위원 수 × 1인당 회의참석 수당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8명 × 150,000원 × 4회
= 4,800천원

※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기본료 10만원,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

·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= 전체 위원 수 ×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× 1년간 회의개최 횟수
= 9명 × 30,000원 × 4회
= 1,080천원

※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53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